

# 국 토 교 통 부

## 시 정 요 구

제 목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반영 부적정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부산광역시(○○본부)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100%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4. 12. 15. 부산광역시 ○구 ○○로 000, ○○빌딩 000호에 있는 ○○종합건설(주) (대표자 ○○○)와 1개사<sup>171)</sup>와 ‘○○권 ○○○ 의·과학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’를 총 공사부기금액 19,631,498,000<sup>172)</sup>원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. 17. 착공하여 2017. 12. 15.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.
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1]의 규정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3]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중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과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등이다.

한편 부산광역시(○○본부)에서 시행중인 ○○권 ○○○ 의·과학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0.7킬로미터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(○○본부)에서는 도로의 신설 연장이 4킬로미터 이하인

171) 충청남도 ○○시 ○○로 000, 0층(○동)에 있는 ○○건설(주) (대표자 ○○○)

172) 2016. 12. 14. 총공사부기금액이 21,356,940,000원으로 변경되었음

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비를 반영하지 않았어야 했는데도,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보다 3.3킬로미터가 짧은 0.7킬로미터의 도로를 신설하는 위 공사의 설계서에 사후환경영향조사비를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비 77,000,000원 상당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.

#### **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**

**[시정]** ○○권 ○○○ 의·과학 일반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77,000,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